

# 대학원 편입학에 관한 내규

**제1조 (목적)** 이 내규는 학칙 제10조(편입학)에 따라 편입학에 관한 세부적 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지원자격)**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에 편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.

① 박사학위과정

국내·외 대학원에서 동일계열의 박사학위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하고 소정의 학점(“B<sup>o</sup>” 이상)을 취득한 자

② 석사학위과정

국내·외 대학원에서 동일계열의 석사학위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하고 소정의 학점(“B<sup>o</sup>” 이상)을 취득한 자

③ 대학원,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학위과정별 지원자격은 별도로 정한다.

**제3조 (모집인원)** ①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내에서 모집할 수 있다.

② 편입학 및 재입학 여석이 동일한 정원에서 산출할 시에는 재입학을 우선 선발한다.

③ 모집인원 산출시 사전 총장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.

**제4조 (전형방법)**

① 전형방법은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에 의한다. 단, 필요할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도 있다.

② 서류심사는 다음 각 호로서 행한다.

가. 대학 및 대학원 성적

나. 그 밖의 대학원에서 정하는 사항

③ 구술시험은 다음의 항목으로 실시한다.

가. 신앙 및 교회생활

나. 인성, 자세, 품성, 소명감과 적성

다. 종합적인 전공수학능력

라. 그 밖의 대학원에서 정하는 사항

④ 제2항과 제3항에 의한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의 각 호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.

⑤ 교회음악학과는 실기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.

**제5조 (전형시기)** 편입학전형은 년 1회 이상 시행할 수 있으며, 그 시기는 각 대학원위원회(신학대학원 및 신학전문대학원은 교수회)의 심의로 총장의 의해 시행한다.

**제6조 (배점 및 평가)** 입학전형의 배점 및 평가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.

가. 서류심사 : 50점 만점

나. 구술시험 : 100점 만점

다. 실기시험 : 100점 만점(\*교회음악학과에 한해서 실시)

**제7조** (지원서류) 편입학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① 박사학위과정

가. 입학지원서(소정양식) 1부

나. 대학 및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증명서 각 1통

다. 대학, 대학원 석사 및 대학원 박사과정 성적증명서 각 1통

라. 그 밖의 기타 서류는 대학원 신입학 제출서류에 준한다.

② 석사학위과정

가. 입학지원서(소정양식) 1부

나. 대학졸업증명서 1통

다.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통

라. 그 밖의 기타 서류는 대학원 신입학 제출서류에 준한다.

**제8조** (선발) 편입학은 각 대학원위원회(신학대학원 및 신학전문대학원은 교수회)에서 입학 심사한 후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
**제9조** (학점인정 및 이수학기) ① 동일 계열 과목에 한하여 학점(B<sup>+</sup>이상)을 인정할 수 있다.

② 인정학점 및 인정학기는 편입학 사정시에 정한다.

③ 이수학기는 수업연한에서 인정학기를 제한 나머지 학기로 하며 인정학기는 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.

**제10조** (준용규정)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의 학칙 및 시행세칙, 기타 관련 내규를 준용한다.

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내규의 개폐) 이 규정의 개폐는 각 대학원 위원회(신학대학원 및 신학전문대학원은 교수회)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시행한다.